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년 03월 16일					
마이다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코드: AP548]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Long-Short 전략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증권 차입 매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마이다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Long-Short 전략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의 70% 이상을, 채권형 모투자신탁(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자산의 30% 이하를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160	0.700	1.590	1.172	120	246	379	664	1,5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810	0.350	1.160	0.822	84	173	266	466	1,06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 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3/17~ 2025/03/16	2023/03/17~ 2025/03/16	2022/03/17~ 2025/03/16	2020/03/17~ 2025/03/16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14-03-17	9.47	9.26	7.40	10.15	3.95
비교지수(%)	2014-03-17	3.82	4.15	2.97	2.77	2.40
수익률 변동성(%)	2014-03-17	6.23	5.39	4.78	6.79	5.76

(주1) 비교지수: KOSPI*7%+매경BP 종합채권지수 국고채 1-2Y*63%+[KIS 중단기지수(1-2Y)*55%+KIS 중기지수(2-3Y)*40% + Call 지수*5%]*3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구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운용전문인력	이천주	1971	책임-주식 (본부장)	17개	3,584	7.82	9.68	-0.11	6.63	22년 7개월
	김예리	1982	부책임-주식 (부장)	29개	9,855	0.73	8.01			11년 8개월
	이호영	1987	부책임-주식 (차장)	10개	2,205	11.33	-			10년 3개월
	기민수	1980	책임-채권 (본부장)	39개	71,279	10.67	10.72			13년 11개월
	김민수	1982	부책임-채권 (부장)	32개	34,598	10.67	10.72			13년 3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 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 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 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 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 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 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 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주식운용 전략으 로 인한 위험	주식투자 부분에서 주식시장을 능가하는 투자 실적을 얻기 위하여, 주식시장 이상의 투자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선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 매도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모펀드(마이더스 거북이 증권모투자신탁(주식))는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하여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증권의 매입 및 상환 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차입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차입비용 및 증권차입에 따른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 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 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투자 신탁에 관한 사 항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 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 는경우로 한정한다.) -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 함) -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 액의 20%에 대 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 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 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04월 24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미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소득공제장기펀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